



부패행위란 무엇인가요?

- ▶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·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▶ 예산집행·재산관리·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- ▶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·권고·유인하는 행위

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?

- ▶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
2020년 11월 20일부터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284개 → 467개로 대폭 확대

부패·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
상 담 국번없이 **1398** 또는 **110**
 인 터 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(www.clean.go.kr)
 팩 스 044-200-7972
 방문·우편 (세종)세종시 도움5로 20,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
 (서울)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,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



-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**비실명 대리신고**도 가능합니다.
-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**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**을 통해 법률상담과 대리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(www.clean.go.kr)에서 확인하세요.

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

부패·공익신고



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,
적극적으로 보상해 드립니다.

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·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부패·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?



철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.

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.

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

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, 신고 등과 관련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 등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

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.

누구든지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,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·행정적·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.

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,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신고자와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, 그 친족 등의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
부패신고 보상금 (최대 30억 원)

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부패·공익신고 포상금 (최대 2억 원)

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로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

공익신고 보상금 (최대 30억 원)

내부 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부패·공익신고 구조금 (치료비, 이사비 등)

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치료비용, 이사비용,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와 협조자, 그 친족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고자 보호 상담은 이곳으로!

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(044-200-7772~7782)

신고자 보상 상담은 이곳으로!

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(044-200-7742~7748)



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?

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(www.clean.go.kr)의 '처음오셨나요?→신고제도 안내→신고자 보호/신고자 보상·포상' 메뉴를 참조하세요.